

아동 노동 금지 지침

아동 노동 금지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및 노동 관련 기준을 존중하여, 아동 노동 금지 및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소자”란 만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만15세 미만의 연소자를 말한다. 단,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제3조(기업의 의무)

- ① 이 규정은 헌법에서 정한 아동에 대한 보호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아동이 노동으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의무교육이 마치기 전의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제4조(아동 고용 금지) 회사는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채용 시에는 만18세 이상을 채용하여, 아동 고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제5조(채용 확인)

- ① 인사부서에서는 신규 채용 시 신규 채용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공적으로 인정된 서류를 통해 나이를 확인하며, 만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는다.
- ② 정부 또는 기타 교육훈련 기관과 연계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과정은 예외로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만15세 미만의 아동은 채용하지 않는다.

제6조(아동 노동 확인 시 조치 사항)

- ① 아동 근로자가 발견될 경우 회사는 다음의 사항들을 조치한다.
 1. 회사는 그 고용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의무교육을 중지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회사는 즉시 해고보다는 아동 노동의 원인이 빈곤 등의 경제적 어려움인지 확인하고 노숙, 기아 등을 겪지 않도록 아동의 가족에게 일거리 제공 등의 대안을 검토한다.

제7조(연소자 근무 조건)

- ① 회사가 제5조 제2항과 같이 불가피하게 연소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연령을 증명하는 문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다.
- ②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연소자를 심리적, 감정적, 성적 남용이 있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④ 회사는 지하, 수중, 높은 곳, 폐쇄된 곳에서 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⑤ 회사는 위험한 기계나 장비를 취급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
- ⑥ 회사는 위험한 물질을 취급하거나 높은 온도, 심한 소음과 진동이 있는 곳에 만18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제8조(건강 검진)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연소자도 건강 검진을 실시 한다.

제9조(협력 업체)

- ① 도급 등의 사유로 사내에서 근무하는 협력 업체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발견하는 즉시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 보호 등 조치를 실시한다.
- ② 회사는 가능한 사내에서 근무하는 협력 업체 직원들의 명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아동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다.

부 칙

부칙 (2022. 12. 1) 본 윤리정책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